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68호 2012. 1. 31(화)

포항시보

◀ 입법예고 ▶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121호) 2
-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144호) 17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150호) 30

◀ 공 시 ▶

- 도로명주소 고시 (제2012-7호)..... 33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제2012-8호)..... 44
-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제2012-9호) 46

◀ 공 고 ▶

-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 (제2012-118호) 60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제2012-146호) 63
-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포항시의회공고 제1호) 65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66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121호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정리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안 제2조)
 - “본사”, “공장”, “사업개시일”의 정의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건을 확대
(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 제19조)
 - 국내외 기업이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 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지원,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

구분	외국기업	국내기업	비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 10명	20명 → 10명	
고용보조금	월 50만원 → 월 100만원 3억원 → 6억원	월 30만원 → 월 100만원 1억원 → 6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월 50만원 → 월 100만원 3억원 → 6억원	월 30만원 → 월 100만원 1억원 → 6억원	

-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구체화(안 제16조)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 지급
 - 신재생에너지사업 시설비의 30%범위내 2억원까지 지원
-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전보조금 지원기준과 일치
(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 20% 범위내 50억원까지 지원
- 관내 기존기업의 증액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3제1항, 안 제22조의3제2항)
 -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시 지원
 -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3.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1월 26일 ~ 2012년 2월 15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기업유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기업유치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424, 팩스 054)270-2430, 이메일 mint517@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 를 “회계연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고용보조금” 을 “고용보조금 지원”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제목 중 “교육훈련보조금” 을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 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목 중 “시설보조금” 을 “시설보조금 지원”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초과할 수 없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제8조 내지 제12조” 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8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고용보조금” 을 “고용보조금 지원”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제목 중 “교육훈련보조금” 을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내국인을 20명 이상” 을 “내국인을 10명 이상”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를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로 하며, “기업당 1억원” 을 “기업당 6억원”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기반시설비 등” 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인당” 을 “1명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를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제18조 내지 제20조” 를 “제18조부터 제20까지” 로 하고, “20명” 을 “10명” 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기업유치촉진지구” 를 “투자유치촉진지구” 로 하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 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 략) 2. <u>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p> <p><신 설></p> <p>4. <u>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u></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 -----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p> <p>1. (현행과 같음) 2. <u>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u>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u> 4. <u>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u></p>

현 행	개 정
<p>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생 략)</p> <p>1. ~ 3.(생 략)</p> <p>4. 기타 투자유치 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생 략)</p> <p>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생 략)</p>	<p>② -----11명</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현행과 같음)</p> <p>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④ -----</p> <p>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 <p>---해당 -----</p> <p>남은 기간-----</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1명-----</p> <p>-----</p> <p>⑦ -----</p> <p>-----</p> <p>-----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p>	<p>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p> <p>-----</p> <p>-----회계연도-----</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p>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 (생 략)</p> <p>1. ~ 3. (생 략)</p> <p>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제9조(고용보조금)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 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1조(시설보조금) ① ~ ② (생 략)</p>	<p>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p> <p>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p>	<p>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p> <p>-----</p> <p>-----</p>

현 행	개 정
<p>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p>	<p>-----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생 략) 1. ~ 2.(생 략)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p>	<p>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p>
<p>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p>
<p>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p>

현 행	개 정
	<p>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 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 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 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 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p>
<p>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생 략)</p> <p>1. ~ 2. (생 략)</p> <p>3.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 -----</p>
<p>제18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 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 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 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 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 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 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국 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 시할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내국인을 10명 이상----- ----- -----</p>

현행	개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 -----1인당 월 100만원까지6개월의 범위----- -----기업당 6억원----- -----</p>
<p>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생략) 1. (생략)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3. 그 밖에 ----- ---</p> <p>② 제1항에 따른 ----- ----- ----- ----- -----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시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p>	<p>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명당----- ----- ③ ----- ----- -----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p>

현 행	개 정
<p>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 --</p>
<p>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생략)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 -----10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 자유치촉진지구----- (현행과 같음) 그 밖에----- -----
<p>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 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의 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22조의3(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p>

현 행	개 정
	<p>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시 지원을 받은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 ----- -----그 밖의----- ----- ----- ----- -----</p>

포항시 공고 제2012 - 144호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다.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으로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한 가축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 및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규모를 정함 (안 제4조)

라. 기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증설 규모·범위 및 가축사육허가 대상종류, 가축사육자의 책무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규제영향 분석서 : 붙임

6. 입법예고 : 2012년 1월 31일 ~ 2012년 2월 20일(20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위생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103~2, 팩스 054)270-3090, 이메일 kimgt67@korea.kr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제3조(주거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가구의 최소단위 : 5호 이상
-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요양병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4. 요양원(「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 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
 -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5조(가축사육 유예) 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가구의 세대주가 100분의 70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다.

제6조(가축사육허가) ①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가축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일부 제한지역 제1호, 제2호
- 2. 제5조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의 증가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은 가축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시설 인근 환경의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가축사육 허가
- 2. 그 밖에 규모 미만시설에 대한 생활환경민원 처리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전부 제한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말, 사슴, 양 - 100m 나. 소 - 300m 다. 젖소 - 500m 라. 돼지, 닭, 개, 오리 - 800m
일부 제한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부제한지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 닭의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거리제한 1.5배수이내) 전체가구의 세대 수 100분의 70 이상 반대시 2.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육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육시설 및 두수	축사				사육 축종 및 두수	
	부지면적 (m ²)	동수	사육면적 (m ²)	증설면적 (m ²)	축종	두수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육장의 위치도 1부 2. 기타 허가에 필요한 서류 1부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가축사육 허가증

-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사육장 소재지
- 4.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축사				사육 축종 및 두수	
부지면적 (㎡)	동수	사육면적 (㎡)	증설면적 (㎡)	축종	두수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규제영향 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	2. 구 분				
		신 설		강 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국 장 지방서기관 안상찬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신기익 담 당 지방환경주사 이정보					
4. 근거법령 등	○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규제수	1			
5. 영향분석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지정)					
	○ 분석방법 (단위 : 두수, 2011.11월)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소	18,741	21,766	23,424	25,535	26,738
	돼지	36,877	36,013	35,902	33,503	33,495
닭	521,369	606,819	597,619	563,107	615,122	
※ 가축사육허가건수 : 2008년 52건, 2009년 51건, 2010년 134건, 2011년 70건						
- 소의 경우 사육두수가 2007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70%증가						
- 「농지법」의 개정으로 최근 가축사육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고 있어 농촌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경쟁제한적 요소 :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보호 필요로 제한거리 밖으로 가축사육 유도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전부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제한]

- 조례 제3조에 의거 보건소장의 의견 수렴후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준주거지역, 관리지역

○ 강화(중전규제 포함) 규제의 내용

[전부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 말, 사슴, 양 - 100m, ·소 - 300m, ·젓소 - 500m, ·돼지, 닭, 개, 오리 - 800m

[일부제한]

- 전부제한지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 닭의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거리제한 1.5배수이내) 전체 가구의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 반대시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기존의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전부제한과 일부제한 지역으로만 되어있어, 일부제한지역의 가축사육시설 입지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가축사육시설 증가로 악취 및 수질오염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되고 있음.
- 특히, 농지법 개정으로 읍면지역의 가축사육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축사와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발산, 해충발생, 주변환경오염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사허가 후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가축분뇨에 대한 사전관리 측면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주거 인접 지역에 축사 난립
- 「농지법」 개정(2007. 7. 4)으로 축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축사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가축사육의 과밀화 현상 초래
- 주택 인접 지역에 축사시설이 난립되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요구 증대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축사신축 제한이 불가피
- 축사의 신축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악취 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에 최소한의 거리를 지정하는 입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질보호로 수질오염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특히, 돼지와 닭의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타 가축보다 입지 제한 강화 운영

라. 규제의 목표설정 및 기대효과

□ 주거생활 보호

-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파리, 모기)등 생활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

□ 소하천 수질보호

-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억제 함으로써 우천시 축산폐수로 인한 셋강 및 소하천 수질환경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축산농가 반발예상

- 노령화, 축산 전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의 주민, 축산관련 단체 반발 예상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지정 시 축산업을 위한 귀농인구의 감소와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제한으로 다소 반발 예상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사입지 규제지역을 지정하므로 실현가능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보호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축사 입지규제지역을 지정하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가축의 악취로부터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는 다수농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호 필요로 설득력이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현행 가축사육제한지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보다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임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 등의 비규제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기존 가축사육제한지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할 필요는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B/C)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으로 인한 가축사육두수나 비용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축사육농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진적으로 호수와 두수가 증가하였음
-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제한으로 나타나는 비용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가축사육현황

(단위 : 두수, 2011.11월)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소	18,741	21,766	23,424	25,535	26,738
돼지	36,877	36,013	35,902	33,503	33,495
닭	521,369	606,819	597,619	563,107	615,122

※ 가축사육허가건수 : 2008년 52건, 2009년 51건, 2010년 134건, 2011년 70건

- 소의 경우 사육두수가 2007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70%증가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부하량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소하천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거밀집지역에 축사입지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축사와 주택간의 일정거리 이상 이격으로 주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집단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 가능하며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격리 용의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계량화가 곤란하나 생활환경개선, 수질오염예방 등의 효과를 분석할 경우 순편익은 아주 클 것임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에 의하여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가에게는 다소 불이익한 면은 있으나,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억제하고 농촌의 미관 저해 최소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임으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나. 기업활동 저해 요소 : 해당없음

6. 규제의 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가축사육시설과 거리를 직선거리(m)로 명확히 규정함
-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사항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있음
- 민원인이 이행하기가 용이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존속기한 타당성
 -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지정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고 존속기한 설치 시 동 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참고사항 :

포항시 공고 제2012 - 150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이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 출산, 양육의 역할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여되고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역할이 장려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부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축근무제(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 확대(안 제23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

3. 참고사항

- 가정친화적 정책 확대(행정안전부 2012 업무보고)
 - 임신여성 공무원 단축·근무제 등 특별휴가제도 확대(2012. 4월)
 - ※ 임신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와 연계하여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시간 최대한 보장

4.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 2012년 2월 1일 ~ 2012년 2월 27일(27일간)****6. 의견제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062~6, 팩스 054)270-2070, 이메일 die4u@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p> <p>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⑤ ~ ⑨ (생 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임신한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 - 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5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8-16외 3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99-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8-16	20091201	용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9-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기로1178번길 148-1	20091201	정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15	20091201	용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13-5	20091201	용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4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41번길 26-1	20091201	용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48-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12-3	20091201	행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분포일로 명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4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57	20091201	호미라 고리인 호미곳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61-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166-20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북대리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173번길 3-8	20091201	호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130	20091201	행정구역명(병포리)을 이용하여 병포길로 명명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126	20091201	행정구역명(병포리)을 이용하여 병포길로 명명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상정리 2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임술로 120-3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임술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임술로 75-15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임술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임술로 416-15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임술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14-11	20091201	포스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18-1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안길9번길 6-6	20091201	남성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안길19번길 6-3	20091201	남성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안길9번길 16-1	20091201	남성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43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195-32	20091201	운제산을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13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강산로130번길 187-14	20111206	칠강산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1279, 84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로 39-7	20091201	대송과 칠강공단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523-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61번길 26-3	20091201	제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523-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61번길 26-7	20091201	제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8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로 37-4	20091201	대송과 칠강공단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780-1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행복길11번길 19-5	20091201	행복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32-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50번길 10-1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95-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52	20091201	행정구역 명(대이동)을 이용하여 대이로로 명명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1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1번길 1	20091201	일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길 28	20091201	행정구역명(도구리)을 이용하여 도구길로 명명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팔산리 3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490번길 94	20091201	호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6, 대장동 333-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88번길 6-5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76번길 6-7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종릉로162번길 33	20091201	종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0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3번길 11-10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23-13	20091201	송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전리 1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41번길 5-1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 11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21번길 7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 25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 55-8	20091201	세계적인 헬강 도시 포항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 26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21번길 24-11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 26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21번길 24-9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 2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21번길 24-13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1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25번길 18-1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19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41번길 51-4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45번길 16-5	20091201	연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45번길 16-4	20091201	연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7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45번길 16-6	20091201	연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조길 7	20091201	옛 지명(부조)을 이용하여 부조길로 명명
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6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45번길 77	20091201	연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10-3, 2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107번길 70-6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40번길 55-1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7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문무리40번길 43-24	20091201	문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9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횡산강남로436번길 8	20091201	횡산강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북리 1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66	20091201	남성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북리 3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25-29	20091201	남성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20, 자명리 57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90-26	20091201	행정구역명(자명리)을 이용하여 자명로로 명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단리 4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209번길 34	20091201	원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리 102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조길333번길 109	20091201	부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리 6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길 68-1	20110630	행정구역명(종명리)을 이용하여 종명길로 명명
6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리 75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종명길 18-11	20110630	행정구역명(종명리)을 이용하여 종명길로 명명
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5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137번길 24-10	20091201	원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62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118번길 10	20091201	원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16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언지로 21	20091201	언일에서 지국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자를 따서 언지로 명명
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4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횡산강남로130번길 187	201111206	횡산강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6-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칠강로723번길 13-8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칠강로723번길 13-4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칠강로713번길 19-5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5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3번길 9-6	20091201	문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7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3번길 24	20091201	문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8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방천로560번길 45	20091201	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86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155	20111206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문덕서로 명명

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8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320번길 9-20	20091201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1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1696번길 29-1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60-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21	20091201	행정구역명(세계리)을 이용하여 세계길로 명명
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3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32번길 4-13	20091201	정몽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17-1	20091201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때 붙여주는 시호를 이용하여 해병부대의 상징성을 이용한 도로명
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5, 35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변로217번길 17-1	20091201	해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2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359번길 1-1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 60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0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 62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2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54번길 16	20091201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3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26번길 20-20	20091201	하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4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 8	20091201	원동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8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4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82번길 20-33	20111221	중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4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82번길 20-35	20111221	중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61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51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8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3-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59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8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270번길 13-9	20091201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298번길 60-4	20091201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2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302번길 14	20091201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40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302번길 57	20091201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낭천로308번길 33-3	20120109	낭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56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암대로382번길 20-1	20091201	회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126, 679-1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림동길 51	20091201	정림로에서 동쪽을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정림동)과 방위(동)을 이용한 도로명
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1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림동길 51-2	20091201	정림로에서 동쪽을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정림동)과 방위(동)을 이용한 도로명
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림동길 23번길 21-26	20091201	정림동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413, 67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924번길 7-9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415, 679-4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924번길 3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4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924번길 1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418, 679-4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26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금곡리 634, 6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신창길191번길 146	20091201	신창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방산리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방산로 312번길 14-16	20091201	방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산서리 7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산서길209번길 17-31	20091201	산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산서리 8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산서길237번길 19	20091201	산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서촌리 6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기면 장기로487번길 68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지리 66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지로487번길 63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8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지로487번길 145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7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16번길 172	20091201	읍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지로48번길 35-6	20091201	장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 24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지로 867-20	20091201	장기면과 오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2-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동주로879번길 10-4	20091201	정동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2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22번길 26-19	20091201	청림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3-3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10번길 11	20091201	청림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3-3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5932번길 6	20091201	동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61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11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3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11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15	20091201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 4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1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23-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번길 35-1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33-2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4-1	20091201	시가지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지형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동 5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84	20091201	시가지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지형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0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영월길 248-23	20091201	옛 지명(영월)을 이용하여 영월길로 명명
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7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미로236번길 18-2	20091201	해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1724번길 24-5	20091201	호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2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6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709	20091201	호미가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44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동길48번길 14-5	20091201	유동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5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15번길 5	20091201	호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57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15번길 13-5	20091201	호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58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 71	20091201	예로부터 호자가 많은 지역으로 호자동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자동 58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 85	20091201	예로부터 호자가 많은 지역으로 호자동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2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길 7	20091201	행정구역명(고지리)을 이용하여 고지길로 명명
1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9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길 61-30	20091201	행정구역명(고지리)을 이용하여 고지길로 명명
1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대리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서길 134-3	20091201	기계의 서쪽지역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1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대리 1088-3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289	20090730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상징이 있는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36	20090730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6-1, 356-3, 35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32-2	20091201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상계리 82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상계길96번길 63-25	20091201	상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내리 63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념길475번길 42	20091201	기념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리리 9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30	20091201	행정구역명(기계면)을 이용하여 기계로로 명명
1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1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33-44	20091201	기동지 저수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1153-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길 33	20091201	행정구역명(학아리)을 이용하여 학아길로 명명
1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7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72	20091201	행정구역명(기계면)을 이용하여 기계로로 명명
1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60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길40번길 58	20091201	학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68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1757번길 69-11	20091201	새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대곡리 7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복로 328	20091201	기복면과 죽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1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덕리 124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덕길 26-61	20091201	행정구역명(오덕리)을 이용하여 오덕길로 명명
1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덕리 13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덕길 53	20091201	행정구역명(오덕리)을 이용하여 오덕길로 명명
1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용기리 16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복로442번길 6	20091201	기복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용기리 27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복로 461-12	20091201	기복면과 죽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1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함정리 50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비학산길 75-10	201111221	포항의 명산 비학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1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91번길 5-15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2-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319번길 5-10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319번길 5-8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5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357번길 6-6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91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357번길 9-1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9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16	20091201	옛 지명(학전)을 이용하여 학전로로 명명
1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901-9, 12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길 100	20091201	행정구역명(광천리)을 이용하여 광천길로 명명
1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진리 9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735-10	20091201	내연산 보경사 근림공원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8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길 108번길 20	20091201	상송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9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봉화길 297	20091201	봉화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봉화길로 명명
1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60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반길497번길 13-26	20091201	기반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들리 4-1, 4-2, 5-3, 5-2,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하로963번길 34	20091201	비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들리 64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들길234번길 10	20091201	상들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들리 산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하로963번길 64-45	20091201	비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40번길 17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35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145번길 22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83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77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73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06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3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66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6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38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천마산역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11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46, 14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9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56, 14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77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1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2-18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2-21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6-18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6-22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36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89번길 11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73번길 6-4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185	20091201	행정구역명(장량동)을 이용하여 장량로로 명명
1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182	20091201	행정구역명(장량동)을 이용하여 장량로로 명명
1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28-22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28-24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28-3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192	20091201	행정구역명(장량동)을 이용하여 장량로로 명명
1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90번길 17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90번길 25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0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1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68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1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50번길 33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50번길 4-1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44번길 2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9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7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28	20091201	행정구역명(양덕동)을 이용하여 양덕로로 명명
2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9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34-12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9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38-13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263번길 5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6번길 65-13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0-15, 120-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44	20091201	옛 지명(용당)을 이용하여 용당로로 명명
2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2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20	20091201	행정구역명(용흥동)을 이용하여 용흥로로 명명
2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88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을 이용하여 우창로로 명명
2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30B 7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세천년대로1001번길 2-46	20111201	세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32B 6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134번길 3-5	20120109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5B 10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25	20091201	행정구역명(우창동)과 방위(동)를 이용하여 우창동로로 명명
2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 5B 9L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21번길 6-6	20120113	우창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98번길 35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98번길 46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1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108	20091201	행정구역명(장량동)을 이용하여 장량로로 명명
2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4-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세천년대로 1299-2	20091201	한동해 물류중심지구 포항이 동해로 횡차개 별어가는 세천년의 회암을 담은 도로명
2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2-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세천년대로31번길 5-8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5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39번길 19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39번길 5-9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1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40번길 64-1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1-47, 11-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정6길 17-10	20091201	죽도시장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6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4-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정4길 25-1	20091201	죽도시장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4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192번길 317-31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192번길 317-35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3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2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27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2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2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2번길 317-19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 29	20091201	죽도시장 중심상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1길 3-3	20091201	죽도시장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11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혜로 66	20091201	대도동과 해도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의 앞글자를 따서 대혜로 명명
2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213번길 23-12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10번길 13-2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4-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대로 63	20091201	행정구역명(상대동)을 이용하여 상대로 명명
2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0번길 32-13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215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감곡리 3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감곡길 243-10	20091201	행정구역명(감곡리)을 이용하여 감곡길로 명명
2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12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만봉산길 952-87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만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6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만봉산길 840번길 20	20091201	만봉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9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만봉산길 761-15	20091201	포항의 최고봉 만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동리 36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892번길 25	20091201	새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44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934번길 29-4	20091201	죽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5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933번길 24	20091201	죽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77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795	20090730	죽장면소재지에서 영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곡리 97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기북로 1808번길 105	20091201	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1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길 100-1	20091201	행정구역명(월평리)을 이용하여 월평길로 명명
2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3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4209-11	20090730	새마을운동 발생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6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4442	20090730	새마을운동 발생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17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6번길 33	20091201	정자리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3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2920번길 12	20091201	새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7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41	20091201	행정구역명(정자리)을 이용하여 정자리로 명명
2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26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길 98번길 7	20091201	합덕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6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길 121-1	20091201	합덕과 하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합사길로 명명
2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고천리 28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고천길 123-3	20091201	행정구역명(고천리)을 이용하여 고천길로 명명
2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덕성리 23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하로 217번길 40-25	20091201	정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덕성리 296-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하로 217번길 6-13	20091201	정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덕성리 296-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하로 217번길 14-16	20091201	정하로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2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망간리 48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비하로 1531	20090730	황이 날아가는 황산인 포항의 명산 비하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미남리 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동해대로 2534-79	20090710	동쪽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송동리 31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사방공원길 127-8	20111221	사방공원이 조성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신흥리 산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용산길 162-79	20091201	정하의 안산인 용산 남쪽자락을 따라 형성된 길로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유계리 3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수목원로 1384번길 20-14	20091201	수목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45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19-6	20091201	청계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555-2, 55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192	20091201	행정구역명(청계리)을 이용하여 청계길로 명명
2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산1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493	20091201	행정구역명(청계리)을 이용하여 청계길로 명명
2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2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1922번길 24-7	20091201	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66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82	20091201	행정구역명(청하면)을 이용하여 청하로로 명명
2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664-6, 66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84	20091201	행정구역명(청하면)을 이용하여 청하로로 명명
2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3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151번길 138-20	20120103	청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22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미리 6-17	20091201	포항여중고 옆을 지나는 도로로 포항여중고의 교회를 이용한 도로명
2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26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이호로5번길 4-11	20091201	이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동동 39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맞이공원길 37	20091201	해맞이공원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상리 16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상로 57-26	20091201	옛 지명(중상)을 이용하여 중상로로 명명
2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1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송로 447	20091201	포항의 개울 소수가 있었던 지역의 산송로와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옛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리리 4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연화길 37	20091201	연을 많이 재배하였던 지역으로 옛 지명(연화)을 이용한 도로명
2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리리 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말진로 152-5	20091201	옛 행정구역 명(말진면)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2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리리 7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세마로394번길 151-62	20091201	세마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42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34번길 35	20091201	덕장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산6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248-9	20091201	행정구역명(덕장리)을 이용하여 덕장길로 명명
2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9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송로 885번길 10	20091201	신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9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송로 885번길 11	20091201	신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2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송로 618	20091201	신강과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신송로로 명명
2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동로 973-15	20091201	오동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오동로로 명명
2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1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길 182번길 11-3	20091201	성곡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346-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동로 963	20091201	오동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오동로로 명명
2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416, 4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스티제로364번길 32-1	20091201	스티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6-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62-6	20091201	흥해에서 한동대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2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68-11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68-17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68-21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68-23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68-4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74번길 5-5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5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61-34	20091201	흥해에서 한동대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2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16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87-1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2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악성리 23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86번길 32-2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악성리 23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86번길 30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4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162번길 4-5	20091201	용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리 2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824-5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29, 22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77-12	20090710	동쪽타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98-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23-2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3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9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29-1	20091201	행정구역명(흥해읍)을 이용하여 흥해로로 명명

3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23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36번길 19-1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7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147번길 23-7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8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769	20090710	동쪽바다를 따라 이어진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132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734번길 10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44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104-5	20091201	칠포해수욕장을 향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 명(칠포리)을 이용한 도로명
3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708, 735, 7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58	20091201	칠포해수욕장을 향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 명(칠포리)을 이용한 도로명
3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1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134번길 40-10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1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134번길 40-12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1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134번길 40-8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4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244번길 44-12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8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11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전길213번길 24-23	20091201	죽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담진로 186-21	20091201	옛 행정구역 명(담진면)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3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전리 산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831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2 - 8 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8-16외 36건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종전주소	중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99-34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로41번길 8-16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로7번길 8-16	20091201	중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48-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로7번길 26-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로41번길 26-1	20091201	중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8-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75-15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332번길 75-15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1-8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14-11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3번길 14-11	20091201	포스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1-7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76번길 6-7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88번길 6-7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262-4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21번길 24-1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간로41번길 24-11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262-5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21번길 24-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간로41번길 24-9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265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21번길 24-1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간로41번길 24-13	20091201	동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10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간로25번길 18-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45번길 18-1	20091201	칠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옥덕리 331-1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릉주로624번길 4-13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릉주로632번길 4-13	20091201	정릉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145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5-15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5-15	20091201	용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덕신동 122-10	포항시 북구 중앙로319번길 5-10	포항시 북구 중앙로329번길 5-10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덕신동 122-9	포항시 북구 중앙로319번길 5-8	포항시 북구 중앙로329번길 5-8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11-47, 11-45	포항시 북구 죽도시정길 17-10	포항시 북구 죽도시정길 4-17-10	20091201	죽도시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6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32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31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3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63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35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3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0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33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3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1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25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25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2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27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27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4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21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2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5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23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23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335-77	포항시 북구 중흥로192번길 317-19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317-19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1-8	포항시 북구 중흥로213번길 23-12	포항시 북구 중흥로225번길 23-12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36	포항시 북구 중흥로310번길 13-21	포항시 북구 중흥로300번길 13-2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37-2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33번길 40-25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40-25	20091201	청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96-19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33번길 6-13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6-13	20091201	청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96-36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33번길 14-16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14-16	20091201	청하로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정계리 555-2, 555-1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정계리192번길 192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정계리 192	20091201	정계로의 구역명(정계리)을 이용하여 정계리로 명명	
포항시 북구 청하면 장진리 265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1918번길 24-7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1922번길 24-7	20091201	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220-4	포항시 북구 장미길 6-17	포항시 북구 학산로11번길 6-17	20091201	포항에서 종고 옆을 지나는 도로로 포항어중고의 교회를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 47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 4-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길162번길 4-5	20091201	용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231-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 1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36번길 19-1	20091201	용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443-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88번길 104-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104-5	20091201	칠포해수욕장을 향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명(칠포리)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7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34번길 40-1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60번길 40-10	20091201	용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7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34번길 40-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60번길 40-12	20091201	용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9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34번길 40-8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60번길 40-8	20091201	용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덕리 1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길213번길 24-2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길185번길 24-23	20091201	죽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2 - 9호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 의거 실시계획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상도동 466-4 일원

나. 면 적 : 당초 84,514㎡

변경 83,989㎡ (감 525㎡)

4. 시 행 자

가. 시 행 자 :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종석

나. 사무소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17-12번지 (2층)

5. 시행기간 : 2010년 9월 2일 ~ 2013년 9월 1일

6. 시 행 방 법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⑪	경상북도 포항시 상도동 466-6번지 일원	84,514	감)525	83,989	상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최초고시(2008.5)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4,514	감)525	83,989	100.0		
공업 지역	준공업지역	84,514	감)525	83,989	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없음)

2-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조서

① 도로총괄표

구 분	기 능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	-	4	821	13,091	감)484	12,607		
중 로	-	-	3	765	12,941	감)583	12,358		
소 로	1 류	보조간선 도로	20	1	388	8,238	감)428	7,810	
	3 류	집산도로	12	2	377	4,703	감)155	4,548	
소 로	-	-	1	56	150	증)99	249		
3 류	특수도로	3	1	56	150	증)99	249		

②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보 조 간선도로	388	광로3-4	대로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9	대로2-2	중로1-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68	중로1-1	광로3-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	3	특수도로	56	중로3-2	광로3-4	일반도로	-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상도동 466-8 일원	1,825	-	1,825		

나. 공간시설

1) 공원결정조서

①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계	개 소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생활권 공원	계	1	-	1	2,844	-	2,844	
	소공원	-	-	-	-	-	-	
	어린이공원	1	-	1	2,844	-	2,844	
	근린공원	-	-	-	-	-	-	

②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어린이 공 원	상도동 455-174 일원	2,844	-	2,844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 지	완충 녹지	상도동 455-107일원	3,569	증)225	3,794		
기정	①	녹 지	경관 녹지	상도동 466-3일원	414	-	41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통업무 설비	대규모 점포	상도동 472-1 일원	22,356	-	22,356		

2-1-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1,200)

: 변경없음

2-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2-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BL1	7,164	-	7,164	■ 환지계획에 따라 개별 획지의 규모를 결정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BL2	19,249	-	19,249	■ 분할 불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BL3	7,574	-	7,574	■ 환지계획에 따라 개별 획지의 규모를 결정

라.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BL4	1,825	-	1,825	■ 분할 불가, 조건부 합병 가능
변경	BL4	1,825	-	1,825	■ 분할 불가
기정	BL5	22,356	-	22,356	■ 분할 불가, 조건부 합병 가능
변경	BL5	22,356	-	22,356	■ 환지계획에 따라 분할가능. 단, 일단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결정함

2-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	BL1	용도	<table border="1"> <tr> <td>허용</td> <td>기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허용점포 : (표.2-2) 참조 </td> </tr> <tr> <td>용도</td> <td>변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표2.)2참조 </td> </tr> <tr> <td>불허용도</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내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td> </tr> <tr> <td>권장용도</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 주택 </td> </tr> </table>	허용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허용점포 : (표.2-2) 참조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표2.)2참조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내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 주택
			허용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허용점포 : (표.2-2) 참조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표2.)2참조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내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 주택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200% 이하, 근린생활시설 250% 이하 											
		높이	최고 높이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 2층(조건부 3층 가능) 다가구주택 : 3층(조건부 4층 가능) 점포주택 : 4층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 2층(조건부 3층 가능) 다가구주택 : 3층(조건부 4층 가능) 근린생활시설 : 4층 										
			최저높이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및 각각부 방향에서는 일치해야 함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방향을 정남(正南)으로 적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설치 - 부대시설높이 2m이하로 제한 - 각종설비시설 차폐 구조(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도는 지하층·반지하층에 설치금지 - 점포주택의 점포는 지하~2층부에 설치 권장 구조(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도는 지하층·반지하층에 설치금지 -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2층부에 설치를 권장 담장 및 대문(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 설치 금지, 단 0.8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재질구조는 허용. 담장 및 대문(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담장 설치 금지, 단 0.8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재질구조는 허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은 검은색계통의 벽돌사용 지양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5m 지정 													

나. 공동주택용지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BL2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층(일조권제한규정 준수, 사선제한규정 준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층 	
			권장높이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주출입구변 10층 이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선제한규정 준수 	
			최저높이	기정	-	
				배 치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상형배치구간내 : 동측 인근 단독주택지로부터 통경 확보와 주거지 경관 랜드마크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비중을 70%이상 권장 연도형 저층배치구간내 : 가로활성화 및 경관유지, 단지입구의 위압감 해소를 목적으로 건축물 층수는 10층 이하로 권장하고, 1~2층에 부대복리시설 배치를 권장 직각배치구간 : 동측 인근 단독주택지로부터 통경 확보와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직각 배치를 준수 통경축확보구간 : 주요 조망요소인 대상지 북측의 철도변 완충녹지축을 향한 시각적 통로와 단지 진입부로서의 개방감 부여를 목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 경우 이외에는 건축물 배치를 지양 부대복리시설 :가로 활성화 및 커뮤니티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상 위치지점 부근 설치를 권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경축확보구간 : 주요 조망요소인 대상지 북측의 철도변 완충녹지축을 향한 시각적 통로와 단지 진입부로서의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동 길이 : 16층 이상인 경우 4호조합 이하, 20층인 경우 탑상형 권장, 15층이하인 경우 6호조합이하, 10층이하인 경우 8호조합이하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설치(조형적 옥탑지다인 및 옥상조경시 예외) ■ 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3-1호선변 :자연소재 투시형 담장(높이1.2m이하)설치 - 계단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피로티 및 외벽 : 시행지침(3-3-1-4~5) 참조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간 같은 계열 색채를 사용하여 단지 이미지 통일화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 프라이버시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하여 5m 지정 ■ 녹지변 : 연속성부여 및 자연친화를 목적으로 최소한도인 3.0m 지정 ■ 공원변 : 공원이용자들의 시각적 개방 및 쾌적성 도모를 위하여 5.0m 지정
		생태면적률	기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삭제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	BL3	용도	허용용도 (NU1~NU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표.2-3) 참조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3~NU4, NU9, NU12~NU17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단, 공개공지 등 제공시 300%까지 완화) 완화산정식 및 산정에 : 시행지침(4-2-2) 참조 	
		높이	최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높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층
			최저높이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및 각각부 방향에서 일치해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옥상 : 각종 설비 차폐를 권장 담장 및 셔터 : 담장설치를 금지하며 0.6m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및 식수대 설치만 허용, 1층 전면에서 셔터를 설치할 경우 1/2이상을 투시형 셔터를 사용 외벽 및 간판·광고물 : 시행지침 (4-3-1-3, 4-3-1-4) 참조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무채색, 밝은색을 사용하며, 원색을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로3-4호선으로 부터 3m 지정 전면 도로(대로2-2호선)경계로 부터 1.5m 지정 측면 경관녹지경계로 부터 2m 지정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도로(중로3-2호선)으로 부터 1.5m 지정

라. 공공시설용지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BL4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속용도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건축연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허용)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최저높이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은 가로에 면하여 지정 금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 건너편에서 시각적 차폐 ■ 담장 및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구간에 담장 미설치 권장 - 담장미설치구간에는 일체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 (단, 대지경계표시를 위한 식수대 및 0.6m이하 생울타리만 허용) - 셔터 설치시 건축물 1층 전면은 1/2이상 투시형태를 권장 	
		색 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대지 및 도로 경계로 부터 1.5m 지정 	
		생태 면적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삭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5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소매시장 (「유통 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부대편의시설 	
			불 허용용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핑센터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현상설계공모 권장) 	
			최저높이	-	
		배 치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전면부는 보행자 진출입 안전을 위하여 차량진출입이 허용되는 가로(중로1-1호선)변 이외에 배치 가로활성화 및 커뮤니티 개방을 위하여 1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아닌 공공편익 및 서비스시설 배치를 권장 중로3-2호선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를 설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내용을 반영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해야 함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장 및 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구간에 담장설치를 금지(일체의 구조물 또는 식수대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대지경계표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0.6m 이하의 생울타리 및 식수대 설치만 허용 외벽 및 간판광고물 : 시행지침(5-3-1-3, 5-3-1-4) 참조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항 시가지 진입부로서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색채를 사용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한 보행유지를 위해 중로1-1호선 및 광로3-4호선으로 부터 5m 지정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경계선 및 중로3-2호선 으로부터 3m 지정 	
		생태면 적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삭제 	

2-2-3.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1,000) :
첨부

〈표.2-2〉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분류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NU1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 기 등) 등의 소매점
	NU2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NU3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 및 조산원
	NU4	■ 탁구장 및 체육도장
	NU5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6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7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NU8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NU9	■ 일반음식점, 기원
	NU10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NU11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12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3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4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 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5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업의 시설
	NU16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련 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동물병원, 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7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표.2-3〉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 허용용도분류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NU1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 기등)등의 소매점
	NU2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NU3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NU4	■ 탁구장 및 체육도장
	NU5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 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6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7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NU8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NU9	■ 일반음식점, 기원
	NU10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11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12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3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4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 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15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 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NU16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련 소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동물병원, 독서실,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NU17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8. 도시 관리계획 결정 도면 : 붙임(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 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 - 118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5일

포항시장 박승호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58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패류양식어업(침하식)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133번지
	성 명	김현찬외 2명
	주민등록번호	551225-1*****
어업면허기간		2002. 8.16. ~ 2012. 8. 15.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1.0ha)
처분 년 월 일		2012. 1. 25.
면허번호		포항 제177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침하식과연승식)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로 30번길 75
	성 명	김현찬외 2명
	주민등록번호	551225-1*****
어업면허 기간		2012. 1.25. ~ 2022. 1.24.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1.0ha)
처분 년 월 일		2012. 1. 25.

어업면허증

- 성명 : 김현찬외 2명
 생년월일 : 1955년 12월25일
 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로 30번길 75
1. 면허번호 :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177호
 2. 어업의 종류 : 복합양식어업(침하식과 연승식)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 미역,다시마 : 연승식 10줄~20줄, 50㎡당1줄(100m) 어장면적에 대한 설비율 5~10%
 - 전복 : 25㎡ 1개(가로 3미터부터 5미터까지, 세로3미터부터 5미터까지, 높이 2.5미터부터 5미터까지 이상)1ha 종묘 2만마리 이상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지선(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 10,000㎡
 6.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 전복,미역,다시마
 7. 포획·채취방법 :양식채취
 8. 어업의 시기 : 01 월 01 부터 12 월 31 일까지 (12 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 2012년 1월25일부터 2022 년 1월24일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 • 정부에서 발하는 명령 제한 조건에 위반 할 때는 본 면허는 취소합니다.
 11. 등록일자 : 2012년 1월 25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12년 1월 25일

포항시장 (인)

어업권 지분내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지 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로 30번길 75	김현찬	55.12.25	1/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52번길 11,101(해동타워)	정선애	62.10.12	0.5/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52번길 11, 101(해동타워)	이신영	87.09.22	0.5/2

포항시 공고 제2012 - 146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1. 30.

포항시장 박승호

1. 공 고 기 간 : 2012. 1. 31. ~ 2012. 2. 19. (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장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 예정일 : 2012. 2. 20.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32주2016호 외 2대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3 ◆ 공고기간 : 2012-01-31에서 2012-02-19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 명	차 명 주민번호	주 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11-173	32주2016 송광식	아반떼 760303-*****	경북 영천시 동부로 14, 304동 104호 (망정동, 주공아파트)	포항시 남구 대도동 66-6 해님원룸 주차장 신진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시 세징과 - 체납자동차압류 (08.9.9) 생활경제 교통과 - 경사과태료 (10.5.11)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2008-045586)
2011-174	경북2너2124 하원락	엘란트라 291103-*****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4번길 26, 나동 308호 (대도동, 중앙상도타운)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5 신진폐차장 입구 공터 신진폐차장		<p>압류 및 지당 없음</p>
2011-191	서울55가4564	리오RX-V 11011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0 천우빌딩8층	포항시 북구 환호동 363-1 환호해맞이공원 주차장 흥해종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구 교통지도과 - 주정차위반과태료 세무1과 - 지방세체납 ● 동대문구 교통관리과 - 주정차위반과태료 ● 은평구 교통지도과 - 주정차위반 ● 병등포구 세무관리과 - 2002년1기분 체납자동차세 교통행정과 - 책임보험 1, 경사미필 1 ● 영은환경과 - 배출가스정밀검사 세무(세외) - 자문차관리법(경사)위반과태료 ● 인천 계양구 교통행정과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4건 ● 광명시 교통행정과 - 주정차위반 2건 ●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 10건, 체납 2건 ● 청주시 흥덕구 건설교통과 - 주차위반 2건 ●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 속도위반 등 58건 ●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사 - 연금보험료체납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 체납차분 압류 ● 가암류 - 김석래 서울남부지원 2003키단8364 ● 지당 - LG캐피탈(주)

포항시의회공고 제 1 호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2년 2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2년 1월 19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공 표 일 : 2012년 1월 27일
- 검 사 일 : 2012년 1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검사대상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한국수자원공사
 - 정 수 : 학야정수장 1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7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2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 전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구 분 (상수원)	유강	공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 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임하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Ⅳ (약간나쁨)	Ⅰ b (좋음)	Ⅰ b (좋음)	Ⅱ (약간 좋음)	Ⅳ (약간나쁨)	Ⅲ (보통)	Ⅰ a (매우 좋음)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27.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안계댐수		임해댐수	형상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농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광·기개 앞부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중금속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17	불검출	불검출	0.16	0.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3.6	0.9	1.1	3.6	3.7	1.0	2.4	1.3	0.9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6	0.02	0.03	0.06	0.06	0.01	0.03	0.04	0.02	
잔류농약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64	0.59	0.52	0.64	0.71	0.58	0.70	0.55	0.90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37	0.038	0.059	0.034	0.039	0.027	0.046	0.044	0.043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12	0.026	0.049	0.010	0.011	0.016	0.022	0.033	0.036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5	0.010	0.010	0.014	0.016	0.009	0.017	0.011	0.007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0	0.002	불검출	0.010	0.012	0.002	0.007	불검출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안계염수		북류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북류수	(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흥해읍	신광, 기계 앞부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44	62	88	135	142	38	86	111	75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3.3	2.4	3.3	2.9	1.6	1.3	2.3	2.5	5.6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6.9	6.7	6.9	7.0	6.9	6.7	6.8	6.7	7.7	
	45.아연(Zn)	3mg/ℓ이하	0.005	0.003	불검출	0.002	0.003	0.014	0.004	0.111	불검출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8	13	12	37	39	11	28	15	11	
	47.중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82	94	117	251	254	78	178	163	161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7	0.09	0.09	0.08	0.07	0.08	0.10	0.07	0.04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69	14	16	68	70	14	44	46	16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2	0.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3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출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병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47	0.41	0.40	0.44	0.44	0.45	0.44	0.41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8	0.061	
7.아연	3mg/ℓ이하	0.005	0.002	불검출	0.004	0.016	0.005	0.003	0.229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8	13	12	38	40	12	29	16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빨리콜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